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4
----------	------

발의연월일 : 2016. 11. 9.

발의자 : 유성엽 · 황주홍 · 정동영

이용호 · 송기석 · 이용주

김관영 · 김종회 · 김경진

김광수 · 이동섭 · 조배숙

김삼화 의원(13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안 제5조제3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아공교육체계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한다.</u>